

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신청

사 건 20〇〇카-	불〇〇〇호 채무불ㅇ]행자 등재신	청사건
신 청 인(채무자)	○ ○ ○ (서울특별시	_)
피신청인(채권자)	○ ○ ○ (서울특별시	-)
등재결정	2000.0.00.	자 20○○카불	불○○○ 결정

신청취지

위 당사자간 20〇〇카불〇〇〇호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사건에 관하여, 20〇〇. 〇. 〇〇.자 결정에 의하여 등재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는 이를 말소하다.

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신 청 이 유

- 1. 신청인은 위 사건의 채무자인 바,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채무 전액을 20○○. ○. ○○. 변제하였으며 피신청자로부터 변제증서를 받았습니다.
- 2. 신청인은 20 ○ ○ ○ . 채무 전부를 피신청인에게 변제하여 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말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 부 서 류



1. 변제증서 1통

2000.0.00.

위 신청인(채무자) ○ ○ ○ (인, 서명)

제출법원	·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한 법원			
	•이 신청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임(민사집행법 제21조)	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 련 법 규	민사집행법 제73조	
불복절차 및 기간	• 말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(민사집행법 제73조 제2항 전문) 다만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.(민사집행법 제73조 제2항 단서) •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(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)			
비 용	・인지액 : 1,000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) ・송달료 : 당자자수×1회 우편료×5회분			
기 타	 *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신청을 할 때에는 변제 그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신청사유를 증명하여야 하며 소명만으로는 부족(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) *기한의 유예, 연기, 이행조건의 변경 또는 채권자의 동의는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음. *말소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(민집규 7조 1항), 채권자는 즉시항고 할수 있음(민사집행법 제73조 제2항 전문) *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채무자에게만 고지하면 됨 	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총칙